

발 간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0

의정활동보고서

제223회 임시회(2008. 5. 20 ~ 5. 2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구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 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등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우리 도에서도 발생하여 도민체전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우려 등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등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면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범죄행위 근절 대책 수립과 노인복지증진 문제에 대하여도 재점검 해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당면현안 사항으로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최근 중앙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영(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우려의 여론이 일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화 추진으로 학부모의 부담은 덜고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이는 공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 하고 연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좋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相千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3. 위원회 활동사항

3. 기타 의정활동사항

VI. 5분 자유발언

VII. 도정질문

부 록

조례안 등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23회 임시회는 2008년 5월 20일 11:00 개최하여 5월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5월 20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 하였으며,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를 긴급 소집하여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심사의결한 후,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에 대해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민간교과서들이 교과서를 펴내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날 채택한 규탄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관계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응책을 촉구케 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방침을 사전에 봉쇄 할 방침이다.

휴회기간인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가졌다.

제2차 본회의를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순범 의원, 김영기 의원, 이준호 의원)을 하고 산회했으며,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한혜련 의원, 장두욱 의원, 정경구 의원, 송필각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제4차 본회의를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안,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승인·의결하고 지난 20일부터 개최된 제22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5월 20일(화)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

- ▶ 일본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어서 우리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 ▶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고, 이제는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 ▶ 이번 일본문부과학성의 행태는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시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점으로 독도를 주장한 망언, 2004년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을 문제삼아 일본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망언을 한데 이어,
- ▶ 이번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지침으로서 교과서에 직접 서술되는 것 이상으로 고질적인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로 간주한다.
- ▶ 일본국의 이번 도발 행위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리고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 ▶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까스로 이루어낸 우호협력적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3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방침에 대하여 영토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1. 일본은 지금까지도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역사교육을 반성하라!
1. 일본은 신세계질서에 부응하고, 모처럼 조성된 한일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독도 침략 야욕을 포기하라!
1.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히 나서라!
1.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 영유권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5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8 - 6호 (2008년 5월 7일)

라. 집회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8년 5월 20일 ~ 5월 29일 (10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 (누계 45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22회 까지	372	23	59	56	57	50	44	57	26
223회	4	1	1	1	1				
누 계	376	24	60	57	58	50	44	57	26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3. 활 동

가. 본회의 전체의사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월 20일(화) 11:00 개의 (제1차 본회의)	○ 제1차 본회의(개회) 1. 개 회 식 2. 안건심사 ①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②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③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④ 휴회의 건	1일간
5월 21일(수) ~ 5월 26일(월)	○ 상임위원회 활동	6일간
5월 27일(화) 11:00 개의 (제2차 본회의)	○ 제2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일간
5월 28일(수) 11:00 개의 (제3차 본회의)	○ 제3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일간
5월 29일(목) 11:00 개의 (제4차 본회의)	○ 안건처리 (폐회)	1일간

나. 위원회

휴회기간인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가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5월 22일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 및 낙동강프로젝트 추진현장에 현지방문을 가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21일에서 22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복지재단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현지확인을 하였다.

교육환경위원회는 5월 20일 14:00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 본청 환경해양산림국소관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통과 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고(1인당 배상금액-1억원, 1인당 의료실비-3천만원)
- 학원등록에 필요한 기준면적 완화(시지역 : 70㎡, 읍·면지역 : 50㎡)
- 교습시간 완화(초·중학생 :23시까지, 고등학생 : 24시까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영유권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5월 21일에서 23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여수의 여수세계박람회 추진 상황과 전북 군산·부안의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 충남 태안의 천리포 수목원 현지확인을 하였다.

농수산위원회는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영천시 청통면 소재 축산농장과 지난 5월13일 도내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과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한미 수입 쇠고기 협상 타결로 국내 한우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난 5월 13일 도내 북부지역에 우박으로 과수 농작물 피해 농가를 찾아 위로 격려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 소재 셋별농장(대표 하상곤, 한우 250두 사육)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한우대책 수립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제는 한우 농가도 소비자를 겨냥한 한우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세워 자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 도내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은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소재 이태식 과수농가와 현서면 두현리 소재 류기조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우박피해 지원대책 수립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통상문화위원회는 경북 북부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도내 외국자본 유치현장 확인 및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22일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현장과 구미 쿠퍼스텍(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종합레저타운으로 건설되는 영주의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은 침체된 경북 북부권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영주시 아지동 189,370㎡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설되는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경북 북부권 관광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CoorsTek Asia社는 구미 국가산업4단지 23B 외국인 투자지역에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세라믹 장비 소재 업체로 총 2천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번 외국유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외국의 첨단기술을 수입하고 신기술 업종을 유치하여 신규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IT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해외 투자기업의 환류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및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등으로 외국의 첨단 고도 기술 수반산업 및 신기술 업종을 유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26일 상주·문경시의 상주 화서 ~ 화북 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현장의 현지확인을 가져 사업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및 공사관계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화서 ~ 화북간 도로공사는(국지도49호선)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서 화북면 장암리 구간 총 18.5km로써 2007년 2월부터 총사업비 557억원(공사비464, 보상비48, 감리비등 45)을 들여 201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본 도로 공사기간이 6년이나 계속되는 장기간 공사로써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발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추진, 부실시공이 없는 완벽한 공사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행정 구현 등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장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8. 5. 27(화) 12:00 (제1차)	○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5.20(화)	본회의 (11:00)	<input type="checkbox"/> 제1차 본회의 ○ 개 회	본회의장
	제1차 상임위 (1330)	<input type="checkbox"/> 상정안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보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기획경제위 회 의 실
5.21(수)		○ 휴 회	
5.22(목)	상임위 현지확인	<input type="checkbox"/>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 및 낙동강프로 젝트 추진 현장 ○ 김천 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 건설현장 ○ 낙동강프로젝트 추진 현장(상주)	현 지
5.23(금) ~ 5.26(월)		○ 휴 회	
5.27(화)	본회의 (11:00)	<input type="checkbox"/> 제2차 본회의(도정 질문)	본회의장
5.28(수)	본회의 (11:00)	<input type="checkbox"/> 제3차 본회의(도정 질문)	본회의장
5.29(목)	본회의 (11:00)	<input type="checkbox"/> 제4차 본회의(안전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일 시	차 수	내 용	장 소
5. 20(화) 11:00	본회의 제1차	<input type="checkbox"/> 개회 ○ 안전처리	본회의장
5. 21 (수) ~ 5.22(목)	상임위 활 동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서울복지재단(서울)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충남)	
5. 23(금) 11:00	상임위 제1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등 심사 ○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도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조례안	행정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5. 26 (월)		<input type="checkbox"/> 휴회	
5. 27 (화)	본회의 제2차	<input type="checkbox"/> 도정질문의원 ○ 박순범(행정보건복지), 김영기(교육환경), 이준호(농수산)	본회의장
5. 28 (수)	본회의 제3차	<input type="checkbox"/> 도정질문의원 ○ 한혜련(통상문화), 장두욱(건설소방), 정경구(기획경제), 송필각(교육환경)	"
5. 29 (목) 11:00	본회의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폐회	"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환경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 20(화) 10:30	<input type="checkbox"/>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환경해양산림국)	상 임 위 회 의 실
11:00	<input type="checkbox"/> 제1차 본회의(개회)	본회의장
14:00	<input type="checkbox"/>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환경해양산림국)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청)	상 임 위 회 의 실
5. 21(수) ~ 5. 23(금)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상황(전남 여수) ○ 새만금간척사업 현장(전북 군산·부안) ○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여 수 시 군 산 시 부 안 군 태 안 군
5. 24(토) ~ 5. 26(월)	<input type="checkbox"/> 휴 회	
5. 27(화) 11:00	<input type="checkbox"/> 제2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장
5. 28(수) 11:00	<input type="checkbox"/> 제3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장
5. 29(목) 11:00	<input type="checkbox"/> 제4차 본회의(폐회)	본회의장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일 시	구 분	안 건	비 고
5. 20(화) 11:00	제 1 차 본회의	○ 개회식 - 안전처리	본회의장
5. 20(화) 13:30	상임위 활 동	○ 간담회 개최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건	상임위 회의실
5. 21(수)		○ 휴 회	
5. 22(목) ~ 5. 23(금)	상임위 활 동	○ 현지 확인 - 축산농가, 우박피해 지역	영천시 청송군
5. 24(토) ~ 5. 26(월)		○ 휴 회	
5. 27(화)	제 2 차 본회의	○ 도정 질문 - 박순범(행정보건복지위) - 김영기(교육환경위) - 이준호(농수산위)	본회의장
5. 28(수)	제 3 차 본회의	○ 도정 질문 - 한혜련(통상문화위) - 장두욱(건설소방위) - 정경구(기획경제위) - 송필각(교육환경위)	"
5. 29(목) 11:00	제 4 차 본회의	○ 안전처리 ○ 폐 회	"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5.20(화)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 ○ 개 회	본회의장
	간담회	○ 당면현안 토의	통상문화위 회 의 실
5.21(수)		○ 휴 회	
5.22(목)	상임위 현지확인	□ 투자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현장 ○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 현장 ○ 구미 쿠어스백(주) 외자유치 현장	현 지
5.23(금) ~ 5.26(월)		○ 휴 회	
5.27(화)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도정 질문)	본회의장
5.28(수)	본회의 (11:00)	□ 제3차 본회의(도정 질문)	본회의장
5.29(목)	본회의 (11:00)	□ 제4차 본회의(안건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5. 20 ~ 5. 29(10일간) 】

日 時	內 容	備 考
5. 20(화) 11:00 ~	<input type="checkbox"/> 제1차 본회의 <input type="radio"/> 개 회	본회의장
5. 21(수) ~ 5.25(일)	<input type="radio"/> 휴 회	
5. 26(월)	<input type="checkbox"/> 상임위 현지 확인 <input type="radio"/> 상주 화서 ~ 화북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input type="radio"/> 기 타	상주 문경
5. 27(화) 11:00 ~	<input type="checkbox"/> 제2차 본회의(도정질문)	본회의장
5. 28(수) 11:00 ~	<input type="checkbox"/> 제3차 본회의(도정질문)	”
5. 29(목) 11:00 ~	<input type="checkbox"/> 제4차 본회의 <input type="radio"/> 안건처리 및 폐회	”

Ⅲ. 의안처리

(2008.5.29현재-223회 최종)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32 (198)	29 (191)	25 (150)	4 (37)	- (4)		3 (7)		
조 례 안	소 계	21 (122)	19 (117)	15 (88)	4 (26)	- (3)		2 (5)	
	의회 제안	6 (30)	6 (28)	5 (22)	1 (5)			- (2)	
	도지사 제출	11 (68)	10 (66)	8 (50)	2 (14)	- (2)		1 (2)	
	교육감 제출	4 (24)	3 (23)	2 (16)	1 (6)	- (1)		1 (1)	
규 칙 안	- (2)	- (2)	- (1)	- (1)					
예산·결산	- (16)	- (16)	- (6)	- (10)					
동의·승인	5 (25)	4 (23)	4 (23)	- -			1 (2)		
건의안	- (4)	- (4)	- (4)	- -					
결의안	1 (9)	1 (9)	1 (8)	- -	- (1)				
기 타 안	5 (20)	5 (20)	5 (20)	- -					

◆ 상임위 유보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2상정유보)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조례안(통상문화위원회-'07.11.2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 (39)	(2)	1 (6)	(3)	(17)	(1)	(1)	(4)	(2)	(3)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4)			(2)	(1)		(1)			
행 정 보건복지	1 (5)	(1)	1 (4)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4)		(2)	(1)				(1)		
건 설 소 방	(15)				(14)					(1)
특 별 위원회	(2)				(2)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39)	1 (39)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4)	(4)				
행 정 보건복지	1 (5)	1 (5)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4)	(4)				
건설소방	(15)	(15)				
특별위원회	(2)	(2)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6, 결의안 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8. 5.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8. 5. 15)
경상북도지사 (2008. 5. 9)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안	"
경상북도지사 (2008. 5. 9)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8. 5. 15)
경상북도지사 (2008. 5. 9)	경상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박순범의원외 33명 (2008. 5. 14)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영식의의원외 22명 (2008. 5. 14)	경상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숙향의원외 31명 (2008. 5. 1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조례 4)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8. 4. 2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5. 19 (제3031호)
2008. 4. 2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2008. 5. 19 (제3032호)
2008. 4. 2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5. 19 (제3033호)
2008. 4. 28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5. 15 (제3030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교육환경 위 원 회	2008. 5. 14 (수)	안동시교육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

4. 기타 의정활동사항

-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08. 4. 18(금), 11:00
 - 장 소 : 구미 1대학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 일 시 : 2008. 4. 18(금), 16: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제2회 소방가족 걷기대회
 - 일 시 : 2008. 4. 26(토), 14:00
 - 장 소 : 문경새재도립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 위촉
 - 일 시 : 2008. 4. 28(월), 13: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낙동강 탐사대 발대식
 - 일 시 : 2008. 4. 30(수), 10:30
 - 장 소 : 봉화 이나리 강변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준공식
 - 일 시 : 2008. 4. 30(수), 14:30
 - 장 소 : 구미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일 시 : 2008. 5. 2(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의정홍보 취약지 언론사 간담회
 - 일 시 : 2008. 5. 2(금)·5. 7(수), 12:00
 - 장 소 : 안동(북부), 포항(동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도의원

- 제36회 어버이날 행사
 - 일 시 : 2008. 5. 8(목), 11:00
 - 장 소 : 의성문화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제15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08. 5. 9(금), 15: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 석 :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 성균관유도회 경북지회 신임회장단 래방
 - 일 시 : 2008. 5. 13(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동명 - 부계간 도로건설공사 기공식

- 일 시 : 2008. 5. 14(수), 10:00
- 장 소 : 제2석굴암 주차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 일 시 : 2008. 5. 14(수), 15:00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한나라당·경북도 당정협의회

- 일 시 : 2008. 5. 16(금), 11: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의제 21 심포지움 참석

- 일 시 : 2008. 5. 16(금), 14:00
- 장 소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참 석 :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

부 록

- 조례안 등 : 11건

【조례안 등 : 11건】

□ 조례안 등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
-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도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합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혁신법무팀”란을 삭제한다.

합 계	16	일반직 : 3급1, 4급2, 5급4, 6급4, 7급4 기능직 : 10급1
-----	----	---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별표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계	내 역		
합 계	30	일반직 : 3급1, 4급3, 5급8, 6급9, 7급8 기능직 : 10급1			합 계	16	일반직 : 3급1, 4급2, 5급4, 6급4, 7급4 기능직 : 10급1		
관광산 업진흥 본부	1	일반직 : 3급1	2010. 10. 31	관광산 업진흥 본부장	(현행과 같음)
혁신 법무팀	14	일반직 : 4급1, 5급4, 6급5, 7급4	2008. 6. 30		<삭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조합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관내에 두고, 주민편의와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이 조합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안의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 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사무,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직접 수행사무

2.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 포함)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5.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6.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②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조합회의

제6조(구성 및 자격) ①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조합회의는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8인, 경상북도 8인, 지식경제부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양 자치단체의 경제 또는 투자유치, 도시개발 관련사무 담당 실·본부·국장
2.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도의원
3. 지식경제부에서 추천하는 자
4. 경제전문가 등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회 또는 기관에서는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의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으로 한다.

제8조(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4.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5.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조합회의는 매년 1회(10월중)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무

제14조(경비부담) ①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예산·회계 등) ①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①조합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5월31일)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 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조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목적에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2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2호 “도 출연금”과 3호 “시·
군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3호, 4호, 5호의 “의료급여법”을 4호, 5호, 6
호의 “법”으로 하며, 6호를 7호로 한다.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세입과 세출)을 제4조(세입과 세출)로 하고, 제①항과 제②항으로 구분한다.

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을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보조조건)을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으로 하고, 제①항의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제②항과, 제③항, 제④항은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을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7조(보고 등)을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로 하고, 제①항과 제②항을 구분한다.

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

제8조(준용)을 제10조(준용)으로, 제9조(예비비)를 제11조(예비비)로 한다.

부 칙(200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사무관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경상북도지사

발 신 : 시장·군수 인

제 목 : 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	지원 내역	보조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장 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	기타행정경비
산출기초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 ----- ----- -----.	- 이하 "법"이라 규정함.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신설> 3.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조 (기금의 재원) <좌동> 1. <좌동> 2. 도 출연금 3. 시·군 부담금 4. 「법」 제21조의 ----- 5. 「법」 제23조의 ----- 6. 「법」 제29조의 ----- 7. 당해 기금의----- -----	- 기금의 재원을 도 출연금과 시·군 부담금을 구분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p>제3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p> <p>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규정 근거</p>
<p>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p>	<p>제4조 (세입과 세출)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p> <p>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p>-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규정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1></p>	<p>제5조 (기금의 보조신청) -----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기금의 보조신청서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p>
<p>제5조(보조조건) ①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p>②시장,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시장, 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 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p> <p>④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이하생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좌동> 2.<좌동> 3.<좌동> <p>②<삭제></p> <p>③<삭제></p> <p>④<삭제></p>	<p>- 보조금의 반환조건과 대불금의 상환조건을 구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신설></p>	<p>제7조 (대불금의 상환) ①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 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라고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 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 대불금의 상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p>
<p>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사무관이 된다.</p>	<p>- 기금관리공무원을 명시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7조(보고등)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 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 	<p>제9조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p> <p>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 총괄표 2. (좌동) 3. (좌동) 4. (좌동) 	<p>- 기금운용현황보고와 결산보고를 구분하여 명시함.</p>
<p>제8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p>제10조 (준용) (좌동)</p>	
<p>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제11조 (예비비) (좌동)</p>	
<p>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에서 “경상북도 한센병 관
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명에서 “(나병의 관리사업)”을 “(위탁대상사업)”으로 하고,

1호의 “나병”을 “한센병의”로 하고,

2호의 “나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으로 하고,

3호의 “나병의”을 “한센서비스 대상자의”로 하고,

4호의 “나병”을 “한센병”로 하고,

5호의 “나환자의 입원치료 사업”을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으로 하고,

6호의 “나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을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으로 하고,

7호의 “일반 피부과 환자의”를 “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로 하고, 8호의 “나병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를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명에서 “(업무의 위탁 및 경비)”를 “(위탁기관 및 예산보조)”로 하고

①항과 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도지사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에서 ①항과 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협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고)에서 ①항의 “사업실적을 매분기별로”를 “매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로 하고, ②항의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을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법」 제4조에”로 하고,

제6조(감독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대상 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도감독 한다.

제6조(시행규칙)을 제7조(시행규칙)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도지사와 협회간에 체결된 나병관리사업위탁 시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경상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 관한조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시행 조례”	- 조례명 변경 : 상위법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제2조(나병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나병예방 및 치료사업 2.나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3.나병의 조사·연구 사업 4.나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나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6.나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7.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기타 나병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2조 (위탁대상사업) 위탁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7. 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 제명을 위탁대상사업으로 규정함. - 관련법령에 따라 “나병”을 “한센병”으로 개정함.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①도지사는 나병관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제2조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기관 및 예산 보조) ①도지사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	- 제명 변경 - 위탁사업기관의 명칭 변경 -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로 개정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협회는 나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협회는 나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도지사는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 (시설의 설치운영) ①협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 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p> <p>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p> <p>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 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규정함.</p>
<p>제5조(사업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거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 (사업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법」 제4조에 의거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사업보고의 기간을 명시 함.</p> <p>- 한센병환자의 진단과 변동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통보토록 규정함.</p>
<p><신설></p>	<p>제6조 (감독 등)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도감독 한다.</p>	<p>- 위탁사업대상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함.</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지사 와 협회 간에 체결한 나이동진료사업수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1999. 7.12>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 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지사 와 협회 간에 체결한 나이동진료사업수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1999. 7.12>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 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08. . .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도지사 와 협회 간에 체결된 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p>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장은 공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3회차 연임부터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운영평가와 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여부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청의 경우.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개정전에 임용된 원장은 다음 연임시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3조(임원)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p> <p>1. 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p> <p>2. 경상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보건위생과장)</p> <p>3~9<생략></p>	<p>제3조(임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p> <p>1.<좌동></p> <p>2.------(보건정책과장)</p> <p>3~9<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정비 - 경상북도 직제변경
<p>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p> <p>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②<신설></p> <p>③<신설></p> <p>④<신설></p>	<p>제5조(원장)①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좌동></p> <p>2.<좌동></p> <p>3.<좌동></p> <p>4.<좌동></p> <p>5.<좌동></p> <p>6.<좌동></p> <p>②원장은 공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p> <p>③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3회차 연임부터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운영평가와 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여부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p> <p>④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p> <p>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법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청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를 통한 원장 임명을 통한 병원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 - 3년단위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책임경영의 강화 - 지속적인 연임규정으로 발생하는 단점 보완 - 법에 의한 해임규정 명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8. . .)</p>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이 조례 개정전에 임용된 원장은 다음 연임시부터 적용한다.</p>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라 함은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및 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산·학·연·관의 협력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 및 운용
4.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5.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경상북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

제5조(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능력 개발
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4.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평가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

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도의회 의원, 도교육청·지방노동관서·대학(교)·산업체 등 지역인적 자원개발 유관기관의 기관장

2.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책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협회의 의장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인적자원개

발사업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협의회는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
3.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제15조(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 개발 계획수립, 정책개발 및 평가 분석,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위탁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의 수행
2.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교육·포럼·세미나 등의 개최
4.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 분석
5. 협의회 운영지원
6. 그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제1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인적자원개발기금

제1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인적자원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도, 시·군의 출연금
3. 기타 출연금·수익금 등

③도지사는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2. 지역인적자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
4.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북도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고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도대학의 교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 할 것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목 적

-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명칭인 「경도대학」의 「경도」는 경상북도의 줄임말임에도 실재 설립주체인 경상북도를 전혀 반영 못하여 대학홍보는 물론 저소득 도민자녀와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 제공이란 설립취지 실현과 이에 따른 대학 정체성 확립에 큰 혼선과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 일본의 경도(京都,Kyoto)대학교와 교명이 같아 인터넷 검색 내용의 50%가 혼동 사용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대학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교명변경은 대학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야 할 현안 과제로 대학구성원(학생,교원,직원,동문)과 지역사회 모두가 한뜻으로 간절히 바라는 「경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기 위함

2. 교명의 변경

- 현재의 교명 : 경도대학(1998.12.16설립인가)
- 변경할 교명 : 경북도립대학

3. 교명의 사용

-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신청 승인
-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후 사용

4. 향후 계획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경도대학학칙 개정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경상북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4.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도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경제과학진흥본부장, 건설도시방재국장, 행정지원국장, 환경정책과장, 회계과장,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환경관련 위원회 위원,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2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13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구매예외) ①법 제6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친환경상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 또는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경상북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한다.
- ③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공표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목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제18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도내기업”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도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활동 지원) 도지사는 학교법인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제공) ①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평가 등) ①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3.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5. 경상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평가
7.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각 1인
2. 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각1인
3.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2인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위원회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들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처 내에 의정연구실을 둔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에 의거 위촉된 자문교수는 이 조례에 의거 의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를“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
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2.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
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학원시설)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 하 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 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2. 학습자료실,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단위시설의 기준)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 인원이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할 것.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② 1항 1호, 2호 및 3호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의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3 (교습과정별 시설기준)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 2로 정하고 있는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반당 기준이 별표 1의 시설규모를 넘는 교습과정에 있어서는 별표 2를 학원의 시설규모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④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학원 중제

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 영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② 영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안에 위치할 것.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 줄 것.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갖추어 줄 것.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 줄 것.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할 것.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할 것.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한다.

제4조의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① 교육감은 제4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별표 3과 같다”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건설기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실습실은 2.4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 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강사채용”을 “강사 등의 채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본문 중 “영 제7조 제2항 및 제12조”를 “영 제7조 제2항 및 제12조와 이 조례 제4조의4”로 하고, “강사”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이하“강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의 본문 중 “강사”를 “강사 등”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7조 제2항”을 “영 제5조 제2항, 영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으로 하고, “수강료·이용료·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수강료 등의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①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제2호 중 “강사”를 “강사 등”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

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제4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면적(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시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보통교과	입 시(종합)	210㎡이상	150㎡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3에 의함		
			검정고시	90㎡이상	60㎡이상	
			보 습	70㎡이상	5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초·중·고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이상	60㎡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70㎡이상	50㎡이상	
	독서실	독서실		120㎡이상	90㎡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 교육 활동	20㎡이상	20㎡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습	70㎡이상	60㎡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영 제3조의2 별표 1에 의함		70㎡이상	60㎡이상	
		경영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90㎡이상	60㎡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90㎡이상	60㎡이상	
			통역, 번역	70㎡이상	60㎡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이상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60㎡이상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율변 등	70㎡이상	50㎡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이상	90㎡이상	
<p>※ 비고 :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 포함),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 보습과정에 초등학교 교과과정만 교습할 경우 면적(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은 시, 읍면 지역 구분 없이 50㎡이상으로 한다.</p>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1. 기계(공작·정비·설계·제도)	가. 시설 1) 기계공작·정비과정 가) 강의실 : 30㎡이상 나) 실습실 : 60㎡이상 2) 기계설계·제도과정 가)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과정 가) 선반 2대 이상 나) 연삭기 2종 이상 다) 모터(7마력 이상) 1대 이상 라) 측정용 공구 5종 이상 2) 기계설계·제도과정 가) 만능제도기세트 10조 이상 또는 CAD시스템 1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건설기계운전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운전실습장 : 900㎡이상 3) 기재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건설기계 가동완제품 2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건설기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관판, 삼각대, 그리스주유기 등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건설기계정비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3) 기재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건설기계 정비용(불가동 분해 조립용) 1대 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오일잭 각 1대 이상 5) 건설기계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건설기계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p>4. 자동차 정비 (농기계 포함)</p>	<p>가.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실 : 30㎡이상 2) 정비실습실 : 60㎡이상 3) 기재실 : 30㎡이상 <p>나.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및 차동기 각 2대 이상 5)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6)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이상 7) 휠바란스 및 휠얼라인먼트 각 1대 이상 8) 밧데리 테스터기 1대 이상 9)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 겸용) 이상 10) 디젤매연 테스터기 1대 이상 11)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이상 12) 타이어 탈착기 1대 이상 13)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이상 14) 농기계의 경우 해당 농기계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배관</p>	<p>가.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p>나.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능절단기 1대 이상 2) 절곡기, 유압시험기 각 1대 이상 3) 파이프머신 1대 이상 4) 전기 또는 산소용접기 1대 이상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용접</p>	<p>가.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p>나.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각 2대 이상 2) 굽힘시험기, 유압시험기 각 1대 이상 3) 보호장비 1인당 1조 이상 4) 용접용 작업대(880×550m/m, 2인용) 5대 이상 5) 특수용접기 1세트 이상 6) 디스크 그라인더 1대 이상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7. 급형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방전 가공기 1대 이상 2) 선반, 밀링머신 각 1대 이상 3) 경도시험기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시계수리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탁상용 선반 1대 이상 2) 전자기계 조정기 3대 이상 3) 뽀지류 1세트 이상 4) 펀치 및 스펀드 각 20개 이상 5) 자동분해소제기 1대 이상 6)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7) 전기 인두기 10대 이상 8)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5대 이상 9) 방수시험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냉난방, 열관리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냉난방 가) 가스냉동기, 온수보일러(부속장치 포함) 각 2종 이상 나) 냉동기 실험장치 1대 이상 다) 냉매충전기, 냉매누설탐지기 각 1대 이상 라) 연소 실험장치 1대 이상 마)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열관리 가) 보일러 4종 이상 나) 보일러 부속장치 다) 버너 4대 이상 라)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가스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가스분석기 및 가스압력기 각 1대 이상 2)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3) 가스청정장치 1대 이상 4) 가스탐지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11. 공예(귀금속 가공·보석감정)	<p>가. 시설</p> <p>1) 실습실 : 45㎡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보석감정 과정</p> <p>가) 현미경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p> <p>나) 굴절계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p> <p>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p> <p>라) 편광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p> <p>마) 분광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p> <p>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p> <p>사) 이색경 2대 이상</p> <p>아)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p> <p>2) 귀금속가공 과정</p> <p>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p> <p>나) 마모기 1대 이상</p> <p>다) 광택기 1대 이상</p> <p>라)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p> <p>마)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p> <p>바)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2. 전기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이상</p> <p>2) 전기실 : 30㎡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직류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1/4마력 이상) 각 5대 이상</p> <p>2) 수전, 송전, 배전실</p> <p>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p> <p>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p> <p>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0×1800m/m) 10대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3. 전자	<p>가. 시설</p> <p>1) 실습실 : 45㎡이상</p> <p>2) 기재실 : 15㎡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공통기준</p> <p>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p> <p>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p> <p>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p> <p>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5대 이상</p> <p>마)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p> <p>바) 녹음기 10대 이상</p> <p>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0조 이상</p>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13. 전자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텔레비전, 패턴발생기(NTSC방식) 1대 이상 ③ 텔레비전 전계강도 측정기 1대 이상 ④ 백터스코프 1대 이상 ⑤ 고전압계 1대 이상 ⑥ 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프린터 2대 이상 ③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라) 영상재생장치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토목·건축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이상 2) 측량기구 각 1대 이상 다. 기타 부속기구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안전관리 (15-1 소방 설비)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2)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3) 방호장치 20종 이상 4) 보호구 5종 이상 5) 안전기기 5종 이상 6) 측정공구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안전관리 (15-2 산업안전)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및 안전기구 등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농림(동물)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16. 농림(동물)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 세트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세트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 15㎡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해양(선원)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수예·자수·섬유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재봉기(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광업자원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실습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20. 에너지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환경	가. 시설 1) 강의실 : 45㎡이상 2)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3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시험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조선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항공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고정익 1대, 회전익 1대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가스터빈기관 가) Turbo Jet 2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측정기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금속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25. 의복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체도대 2인당 1대 이상 2) 시청각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4) 모터미싱 10대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8) 다리미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조리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이상) 1대 이상 3) 오븐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제과·제빵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추저울(5kg이상)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이상 9) 냉장고(1,000ℓ이상)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인쇄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기타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29. 조주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산업디자인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피아노 조율	가. 시설 1) 실습실 : 45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폰벤더,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 이용	가. 시설 1) 실습실 : 45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 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33. 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텡) 2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파마기 20중 이상 라)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이상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6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이상 자) 세팅기구 10개 이상 2) 피부 미용 과정 가) 마사지 침대 10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세탁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세탁기(대형) 1대 이상 2) 다리미 10대 이상 3)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4) 건조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5.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2) 암 실 : 6㎡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정보 통신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운영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컴퓨터(하드디스크 20GB 이상)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36. 정보 통신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0대 이상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 45㎡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3) 시력표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계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세트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미터 VTR 5대 이상 4) VTR카메라 10종 이상 5) 8mm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세트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40. 영화	가. 시설 1) 현상실 : 15㎡이상 2) 녹음실 : 15㎡이상 3) 실기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각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관광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각 1매 이상 3) 실습실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방송	가. 공통시설 1) 강의실 : 30㎡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UNIT) 1대 이상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UNIT) 1대 이상 ③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이상 ④ 파형감시기(WAVE FORM MONITOR) 1대 이상 ⑤ 방송용 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이상 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AUDIO MONITOR) 8대 이상 ⑨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이상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 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 기재실 30㎡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42. 방송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90㎡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1) 유선방송 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시설 ② 기재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 튜너(CO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이상 ④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이상 ⑥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이상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이상 ⑧ 주파수대환기(SCRAMBLER) 1대 이상 ⑨ 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 채널혼합기 1대 이상 ⑪ 채널변환기(8CH 이상) 1대 이상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이상 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42.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M) 1:1 2대 이상 ㉕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㉖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㉗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녹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㉘ 녹음조정실 30㎡이상 ㉙ 녹음스튜디오 30㎡이상 ② 설비 및 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㉚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이상 ㉛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㉜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㉝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㉞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㉟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이상 ㊱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㊲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이상 ㊳ MULTI TRACK RECORDER 1대 이상 ㊴ CASSETTE DECK 1대 이상 ㊵ COMPACK DISK 1대 이상 ㊶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이상 다) 야외녹화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서·리포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43. 펜글씨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책·결상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 주산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 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 45㎡(현대무용인 경우 60㎡) 이상 2) 탈의실 : 남·여 각각 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기타 필요한 악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서예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2) 지필묵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법도서 10권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음악	가. 시설 1) 음악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③ 기타 교습과목 악기 각 4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모델·연극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1)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각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49. 미술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또는 실습용탁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 당 1개 이상 2) 서양화 과정 :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3) 동양화 과정 : 벼루, 모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바둑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꽃꽂이·꽃기예	가. 시설 1) 실습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껌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화술·옹변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마이크 1대 이상 2) 연단 및 녹음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만화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국토개발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시계획 및 조경과정 가) 제도실 : 10㎡이상 나) 제도대 : 10조 이상 2) 지적과정 가) 기계실 : 20㎡이상 나) 평판측기 10조 이상 다) 트랜짓 5조 이상 라) 레벨 5조 이상 마) 데오돌라이트 3조 이상 바) 구석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55. 교통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4조 이상 2) 교통량 기록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독서실	가. 시설 1) 열람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 58cm이상) 2) 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열람실의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포장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 속기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속기용 사무기기 1인당 1대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전산회계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전자상거래, 사회조사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티엄급 이상 퍼스널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텔레마케팅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2) 헤드셋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62. 애견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직업상담,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4. 강의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습대 10대 이상 2) 수의 (남·여 구분) 10세트 이상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5.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 15㎡이상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 설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6. 게임, 정보처리, 캐릭터, 출판, 로봇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7. 마술(매직)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68.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2) 강의실 :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과정 가)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5대 이상 나) 위험물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이상 다)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과정 가)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 기기 5종 이상 3) 화약류 제조 과정 가) 화약류의 제조·분석·시험에 필요한 기기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69. 특수교육(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가. 시설 1) 개별실 6.6㎡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 나. 교구 1)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1.1.1.1.1.1.

1.1.1.1.2. [별표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제4조의4 제2항 제3호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660㎡이상 나. 보건실 : 33㎡이상 다. 휴게실 : 66㎡이상(남녀별로 구분 가능) 라.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단 외부 체육장은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함)																																							
숙박시설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정원 × 4㎡이상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정원 x 0.4㎡이상(남여 구분) 3) 세탁실 1실 이상(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정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이상 3) 급수시설(정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table border="1" data-bbox="242 896 1426 1330"> <thead> <tr> <th>급식 인원수(정원)</th> <th>면 적</th> </tr> </thead> <tbody> <tr><td>50인 이하</td><td>14㎡</td></tr> <tr><td>51인~100인</td><td>14㎡+0.14㎡×(급식인원수-50)</td></tr> <tr><td>101인~150인</td><td>21㎡+0.14㎡×(급식인원수-100)</td></tr> <tr><td>151인~200인</td><td>28㎡+0.14㎡×(급식인원수-150)</td></tr> <tr><td>201인~250인</td><td>35㎡+0.14㎡×(급식인원수-200)</td></tr> <tr><td>251인~300인</td><td>42㎡+0.14㎡×(급식인원수-250)</td></tr> <tr><td>301인~600인</td><td>49㎡+0.05㎡×(급식인원수-300)</td></tr> <tr><td>601인~900인</td><td>64㎡+0.04㎡×(급식인원수-600)</td></tr> <tr><td>901인~1,200인</td><td>76㎡+0.04㎡×(급식인원수-900)</td></tr> <tr><td>1,201인~1,500인</td><td>88㎡+0.04㎡×(급식인원수-1,200)</td></tr> <tr><td>1,501인 이상</td><td>100㎡+0.02㎡×(급식인원수-1,500)</td></tr> </tbody> </table> 2) 시설·설비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242 1406 1426 1827">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배수설비</td> <td>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2. 가열설비</td> <td>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td> </tr> <tr> <td>3. 환기·조명설비</td> <td>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td> </tr> <tr> <td>4. 세척설비</td> <td>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5. 방충·방서 등 설비</td> <td>창문 및 출입구 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td> </tr> <tr> <td>6. 기타 시설·설비</td> <td>배선대 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급식 인원수(정원)	면 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인원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인원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인원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인원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인원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인원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인원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인원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인원수-1,200)	1,501인 이상	100㎡+0.02㎡×(급식인원수-1,500)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 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 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식 인원수(정원)	면 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인원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인원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인원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인원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인원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인원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인원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인원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인원수-1,200)																																							
1,501인 이상	100㎡+0.02㎡×(급식인원수-1,500)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 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 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급식시설	3) 기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33 286 770 327">품목</th> <th data-bbox="770 286 1445 327">비고</th> </tr> </thead> </table>	품목	비고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 내지 90cm로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보관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100kg, 10kg 및 1kg용 각 1대를 갖춘다.		
	10. 계량컵	1개 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각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씩 갖춘다.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온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33 1323 770 1364">품목</th> <th data-bbox="770 1323 1445 1364">비고</th> </tr> </thead> </table>	품목	비고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 기기				
다. 식당				
1) 면적 : 정원 x 1/2 x 1m ²				
2) 식탁 및 의자 : 정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별표 4]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제12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 [학원]			
1) 허위 기타 부정 등록	폐 원		
2) 시설기준미달 및 임의변경	시정 명령 (경 고)	휴 원	폐 원
3) 무단명칭, 위치변경	휴 원	폐 원	
4) 무단 설립자 변경	휴 원	폐 원	
5) 설립자 행방불명(2월 이상)	폐 원		
6)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경 고	휴 원	폐 원
7) 수강료 초과징수	경 고	휴 원	폐 원
8)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 고	휴 원	폐 원
9)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경 고	휴 원	폐 원
10) 수강료 미통보	경 고	휴 원	폐 원
11) 광고물 수강료 미표시	경 고	휴 원	폐 원
12) 무자격강사 채용	휴 원	폐 원	
13) 강사 채용 미보고	경 고	휴 원	폐 원
14)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경 고	휴 원	폐 원
15) 목적, 편제(교습과정) 위반	경 고	휴 원	폐 원
16)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 고	휴 원	폐 원
17)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폐 원		
18) 2월 이상 무단 휴원	폐 원		
19)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휴 원	폐 원
20)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학원에 재학생수용	폐 원		
21)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휴 원	폐 원	
22)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 고	휴 원	폐 원
23) 허위, 과대광고	경 고	휴 원	폐 원
24) 허위증명 발급	휴 원	폐 원	
25) 환경불량	시정 명령 (경 고)	휴 원	폐 원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6)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경 고	휴 원	폐 원
27) 독서실 남녀 혼석	휴 원	폐 원	
28) 보험·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가입	경 고	휴 원	폐 원
29)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경 고	휴 원	폐 원
30) 정지 명령 불이행	폐 원		
31)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경 고)	휴 원	폐 원
2. 법 제17조제2항 위반 [교습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 지		
2)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3)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중 지	폐 지
4) 무단명칭, 위치변경	중 지	폐 지	
5) 목적, 교습과정 위반	경 고	중 지	폐 지
6)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 고	중 지	폐 지
7) 무단강사 채용	폐 지		
8) 재학생 불법수용	폐 지		
9) 금품편취	중 지	폐 지	
10) 보험·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가입	경 고	중 지	폐 지
11) 광고물 수강료 미표시	경 고	중 지	폐 지
12) 교습료 미통보(미게시, 허위게시)	경 고	중 지	폐 지
13)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료 영수증 미교부	경 고	중 지	폐 지
14) 허위·과대광고	경 고	중 지	폐 지
15) 제장부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중 지	폐 지
16) 교습자 연수 불참	경 고	중 지	폐 지
17) 행정처분기준표, 교습소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중 지	폐 지
18) 환경불량	시정 명령 (경 고)	중 지	폐 지
19)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폐 지		
20)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생활지도,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중 지	폐 지	

[별표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4조의2 제5호 관련)

1. 환기

- 가. 환기용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명(인공조명)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온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u>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u></p> <p>제 2 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 <u>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2.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p>② <u>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u></p>

현 행	개정 안
<p>제4조(시설기준)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 2로 정하고 있는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반당 기준이 별표 1의 시설규모를 넘는 교습과정에 있어서는 별표 2를 학원의 시설규모로 한다.</p>	<p>제 4 조(학원시설)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 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에 비하여 적게 운영 되는 학원을 말한다.</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 (영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법 제8조제2항 및 영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 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p> <p>4. 화장실, 급수시설</p> <p>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p> <p>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p>1. 강당, 회의실, 사무실</p> <p>2. 학습자료실, 도서실</p> <p>3. 상담실</p>

현 행	개정 안
<p><신설></p>	<p>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p> <p>제4 조의2 (단위시설의 기준)① 법 제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p> <p>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p> <p>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p> <p>4.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p> <p>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할 것.</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p>

현 행	개정 안
	<p>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 것.</p> <p>② 1항 1호, 2호 및 3호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의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신설></p>	<p>제4조의3 (교습과정별 시설기준)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 2로 정하고 있는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반당 기준이 별표 1의 시설규모를 넘는 교습과정에 있어서는 별표 2를 학원의 시설규모로 한다.</p>
<p><신설></p>	<p>②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p>
<p><신설></p>	<p>③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p>

현행	개정안
<신설>	<p>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 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④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신설>	<p>제4조의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 영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p>
<신설>	<p>② 영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안에 위치할 것.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

현 행	개정 안
	<p>출 것.</p> <p>3. <u>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갖출 것.</u></p> <p>4. <u>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u></p> <p>5. <u>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u></p> <p>6. <u>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할 것.</u></p> <p>7. <u>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할 것. 다만, 남녀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한다.</u></p>
<p><신설></p>	<p>제4조의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① 교육감은 제4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p>
<p><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p>

현 행	개정 안
<p><신설></p> <p>제 6 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u>별표3과 같다.</u></p> <p>제 7 조 (<u>강사채용 및 해임통보</u>)①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를 채용한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를 해임</p>	<p><u>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③ 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p> <p>-----</p> <p>-----</p> <p>-----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건설기계운전 교습과정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 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실습실은 2.4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 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p> <p>제7조(<u>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u>)① -----영 제7조 제2항 및 제12조와 이 조제 4조의4-----<u>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이하“강사 등”으로 한다)을</u>-----</p> <p>-----</p> <p>-----</p> <p>② -----<u>강사 등을</u>-----</p>

현 행	개정 안
<p>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p>
<p>제 8 조 (수강료 등의 통보) ① 영 제5조 제2항제4호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수강료·이용료·교습료(이하“수강료 등”이라 한다)와 설립자 변경은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 시설변경은 4일전, 위치변경은 7일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 ③ 신설</p>	<p>제8조(수강료 등의 통보)① 영 제5조 제2항, 영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의-----수강료 등의 금액과-----</p> <p>-----.</p> <p>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0조(학원의 개원시간 등)① 학원의 시작 시간은 학원별로 정하되, 종료 시간은 22시(성인 : 23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의 출입을 금한다.</p>	<p>제10조(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p> <p>①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p>

현 행	개정 안
<p>제13 조(과태료) -----</p> <p>1. 생략</p> <p>2. <u>강사</u>-----</p> <p>3 - 8 생략</p>	<p>제13조(과태료)-----</p> <p>1. 현행과 같음</p> <p>2. <u>강사 등</u>-----</p> <p>3 - 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p>

현 행	개정 안
	<p>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등록하여야한다.</p> <p>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p> <p>제5조 (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p>

VI. 5분 자유발언

□ 2007년 5월 20일(화) 제22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김수용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6월9일 도청이전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3백만 도민들의 숙원인 도청이 드디어 이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통한 입지기준을 설명하면서 도민들은 동서남북으로 편이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14일, 15일 칠곡과 영덕에서 개최된 평가기준 설명회는 경북도가 분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기 지역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설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 몇 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째는 도청이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시·군당 30명씩 690명을 설정하여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여론수렴 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 50%, 전문가 조사 50%를 반영하는 조사에서 도민 여론조사표를 살펴보면 평가기준 5개 항목인 균형성,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묻는 가중치 여론조사표는 초등학생도 웃을 도안이라 생각됩니다.

5개 항목의 나열 방식이 균형성이 4개, 성장성이 3개, 접근성이 2개, 친환경

경성 1개를 앞부분에 묻고, 그에 상응하는 항목을 뒤편에 묻는 방식의 조사표는 지나치게 균형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표라 생각되기에 반드시 시정하여 공정하게 끌고루 5개 항목을 묻는 방식으로 택해야만이 진정한 도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별로 동일하게 30명씩 묻는 여론조사 방식은 잘못된 선정 방식으로 3백만 도민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5월9일 제12차 추진위의 회의 결과를 10일후인 19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도민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회의시 도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출되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우경, 송필각 도의원이 시·군별 조사대상 인원에 인구수 감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지만 무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행여 여론조사를 미리 하였다면 그 여론조사는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사장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평가기준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균형성의 연계발전성과 성장성의 동반 성장 잠재력 부분에 4대 생활권역을 기본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생활권역중 남부도시권의 경우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청도, 영천이 같은 생활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천, 경산, 청도는 어느 정도 같은 생활권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영천이 고령, 성주, 칠곡과 같은 생활권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면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공정한 자료를 제시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애매모호한 지침과 도민 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기준으로 행여 경북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도민이 수궁할 수 있는 도청이전이 되어야 하고, 3백만 도민의 뜻을 담은 신도청 후보지가 결정되어 새경북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7년 5월 20일(화) 제22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채옥주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인 아름다운 5월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모여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록의 푸르름을 상징하여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5월에는 각종 행사가 풍성하고 성년의 날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많은 행사가 도처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노라면 과거에 비해 신체발육이 빨라져 기성세대에 비해 덩치는 커졌지만 그래도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미숙한 편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힐 때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화려한 실적에 비해 아이들의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봅니다.

최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어른들의 납치, 살해, 성폭력 사건이나 일련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은 허술한 치안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과 청소년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한 사회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얼마 전 안양초등학생 혜진·예슬 양의 납치살해 사건과 일산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에 이어 대구초등학생 집단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몇 명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준 사건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사건이 수없이 있었고 심지어 자살사이트까지 만들어져 실제 죽음으로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소년 보호라는 구호와 1회성 대책만 있었을 뿐 청소년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훗날 야기될 우리사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일하였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건수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05년 13건, 2006년 27건, 2007년 10건, 2008년 5월 현재 6건이고, 14세 이상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는 2005년 5건, 2006년 9건, 2007년 13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릴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이 봉우리가 채 피기도 전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단을 만들어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도와주고 심지어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나서서 호랑이할아버지단까지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주택가 골목마다 스스로 눈을 뜨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마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애정이 절실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경북도의회를 비롯하여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그리고 주민자치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7년 5월 29일(목) 제22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숙향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숙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20일 교육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상북도 교육청소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교교육을 내실있게 강화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금액 최저한도 설정, 학원등록 기준 면적 완화, 학원교습 시간을 연장, 초중학생은 밤11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입니다.

또한 지하실 학원의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학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기준금액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최소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반지하 상태의 학원설립,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원등록 기준 완화와 학원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학원의 이해는 반영하였는지 몰라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고 더불어 학원의 교습환경을 악화시키는 안이라는 점입니다.

pc방, 노래방 등 업소에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9시입니다. 이는 청소년기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2시 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과 안전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은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 건강을 위해 시도의회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3월 서울시의회에서 학원교습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으켜 여론의 역풍과 이명박대통령이 공교육을 살리는데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현행 밤10시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월25일 학원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을 하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박주홍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개적으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울산 등 일부 광역시도 역시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조례안 심의를 보류 재논의 하는 등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부모가 고등학생이 되고 아이가 고3이 되면 모든 가족이 고3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밤10시까지 야간자율 학습을 하고 교문앞에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에 올라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고 집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자면 밤 1시, 2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너 시간 잠을 자고 다시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은 먹는 등 마는 등 7시면 학교에 다시 도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 인성은 어디에 있고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간에는 미래를 담보 잡히고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벌사회로 구축된 사회적 지위에 진입하기 위해서 같은 반 친구들, 아니 같은 학년을 친구들을 이기기 위한 등수 경쟁을 위해 내몰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학교는 진학을 위한 졸업장을 받는 곳으로 인식된 지 오래고 학원의 문제 풀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원에서 문제 풀이로 날을 새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에 잠을 보충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는 시·도간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이 논란조차 인구가 격감하여 학원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부 시·군의 입장을 보면 배부른 논란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교육당국에서 밝혔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인터넷 수강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적 수요를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공적인 영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교육의 확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정보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밤10시 넘어서까지 학원교습을 연장하여 모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된 인프라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인들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학원교습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원교습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내용에 대한 고민없이 소모적인 등수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험횟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균형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미래의 나라와 지역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 학부모 사교육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을 독려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학원 교섭문제는 학원의 영리성의 관점보다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를 기르는 일로 바로보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원시간 연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설립 면적 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정안이기 이번 회기에 처리를 보류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주체와 도의회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이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토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과 인성을 모두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I. 도정질문

□ 2008년 5월 27일(화) 제22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순범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방대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북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히 위기의 시대라 불려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 위기만큼 우리 경북에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정질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후에 전국적인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민들 사이에 먹을거리 안전과 인체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1일 영천에서 최초 발병된 이후 급기야는 14일 예정된 도민체전까지 무기 연기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방역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또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량과 지혜를 모아 AI 방역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AI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방역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농수산국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방역을

위한 타 기관과의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초 AI 신고 이후에 AI가 양성 최종 판명 시까지는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자체적인 조기판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의과학검역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AI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을 시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가축방역 예산 및 기획 등의 업무만 관할하고 실질적인 행동 업무는 전국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방역조직이 맡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형태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AI 인체감염 발생의 예방 및 치료시스템도 대폭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AI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보유량 권장치가 인구의 20% 정도인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1,500명분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미플루를 보유한 경우에도 환자 1명이 7~10정을 복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AI가 확산될 경우 일반 도민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살처분 대상 산란계 농장주들이 보상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면서 관련 농가의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정부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하여 축산행정 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일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료값 인상에서 한우값 하락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전국에서 사육규모 1위인 우리도의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FTA 등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육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펼쳐 나오고 있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한우고장이라는 위상과 걸맞지 않게 경북도의 축산경영과의 올해 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199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축산행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아울러 날로 치솟는 사료 값 보전과 송아지 값 폭락에 따른 손실보전, 가격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시름에 젖어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값싼 한우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심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농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쇠고기 유통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값의 40% 가량은 중간유통비용과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축산농가를 조직화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등 유통체계의 효율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재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분야를 다른 부분과 같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소방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방의 열악한 여건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등 9개 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의 면적은 서울보다 31배이면서도 경북에 대한 소방인력과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군, 경찰, 교육, 소방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이 필요한 소방부분만 지방자치에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원의 과부족은 일부 지역에서 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모두 맡도록 하는 나홀로 지역대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주 8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나홀로 지역대는 현재 60%를 상회하는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는 소방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일선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행정직으로,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현장인력으로 재배치하는 소방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등 차종별 내구연도 경과차 현황을 보면, 우리 경북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율이 44%, 대전시가 4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가 경북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포함하여 모두 5건, 그리고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미 8건을 공모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정부가 특정사업의 사업비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이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용이

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가 응모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열악한 경북도와 일선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 현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을 보면 모두 14건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72억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국비투입액은 총사업비의 34.2%, 3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2%, 시군비는 2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선시군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유치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교단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취업난, 해결의 기미가 없는 비정규직 양상체제 등은 우리 사회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초·중·고 교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가 늘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정교사 신규채용 비율은 전체 신규채용 교사 중에서 16.4%이며,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비율은 8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경북의 신규채용 정교사 비율이 1.8%, 기간제 교사비율이 98.2%에 달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단의 비정규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우리 경북의 경우처럼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교육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08년 5월 27일(화) 제22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영기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저는 오후에 할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송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해외순방 시 공식 특별 수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통령 공식 수행을 통해 얻은 투자유치 실적은 경상북도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한 향후 지역 경제 회생에 탄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각고 끝에 취임 이후 지금까지 4조5,000여억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실적은 우리 도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교과서 독도 영토 왜곡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영토 주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도발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예정인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이른 바 교사들의 수업 시 학습지도 지침서로서 교과서에 직접 명기한 것 이상으로 지능적이고 저질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자국 영토라고 망언을 할 때마다 정부나 자치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는 궤기대회나 일본 성토로 끝나고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되풀이해 왔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일회성 행사나 성토 위주의 구호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구태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도 접안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울릉도에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도 거주 세대 수를 더 많이 늘리는 등 일본이 더 이상 망언이나 영토침해 야욕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면서 LA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목전에 두고 한우 축산농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까지 겹쳐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물가 상승에다가 사료 값까지 폭등해서 축산농가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의 경우 한우 사육 두수가 4만1,000호에 42만1,000여 마리로 전국 178만2,000여 마리의 2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 사육 규모와 총 90여개의 축산물 브랜드를 보유한 명실공히 한우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은 도내 축산농가의 가격하락을 촉발시켜 지난 연말에 비해 암소는 18만원, 수소는 85만원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가 도를 위해 가장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율 감소방안 및 취업률 제고, 합리적 결혼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 가족은 2004년에 1,663가정, 2005년 2,218가정, 2006년 2,859가정, 2007년 610가정 그리고 2008년 3월말 현재

4,864가정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민자 가정 부부들의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이혼율을 보면 2004년 75가정, 2005년 117가정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년에는 228가정으로 무려 94.8%나 증가했습니다.

여러 사회 연구단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소통의 문제점, 지역사회와 다문화 공동체 여건 조성 미비점,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수혜대상자가 아니라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학력 및 직업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취업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하는 이혼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결혼이민자 가정의 이혼사유를 보면 부부간의 연령차가 10년에서 20년까지 차이가 나서 문화적 갈등에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고, 결혼을 위한 중계수수료도 700여만원 정도로 과다한데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여성의 부모에게 지참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결혼 후의 경제적 부담이 심하고 특히 지체장애자의 경우 성격 결함으로 인해 여성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잦은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 성격,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건에 있는 상대를 선택해서 중매를 해야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혼율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도 같은 상황의 동일 대상을 두고 정부 내에서조차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결혼이민자, 이주여성농업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여성부는 결혼여성이민자, 기타 언론 및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일된 용어가 없고 사용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차제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들 국제결혼 여성들에 대해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지사과 교육감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도청 차원의 교육사업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언제나 정책의 최대 현안들 중 하나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최대 현안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더 이상 학교 교육은 교육행정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교육 진흥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강화하는 등 예산 규모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행정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특별시는 2006년에 시청조직 내에 국 단위 수준의 교육지원전담실을 설치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우수인재 양성사업, 청소년 안전복지사업, 자립형 사립고 및 학교 신설사업 등 4개년 계획으로 연평균 3,500여억원의 규모로 총 1조 4,000여억원을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역원을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형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5년간 약 7,500억원을 도청이 직접 영어체험마을 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적자원을 개발 ·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 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 용의가 없으시다면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제정 등

을 포함하여 경북도청의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차원의 교육사업 지원 및 관련 부서 설치에 따른 도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교육 진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지사께 도청차원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서울수도 교육협력관실을 설치하여 4년간 1조4,000여억 원, 경기도 5년간 7,500여 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형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전담실을 설치한다면 도 교육진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팀을 도청에 파견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신설 및 시설개축과 개·보수 업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부를 도청에서 맡아 일정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화장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등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말 현재 경북도내 초·중·고 972개 학교 중 순수 재래식 화장실은 23개교 30개 동이고 수세식 사용학교 중 재래식화장실은 270개교 294개 동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숫자는 그냥 듣기에는 심각하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학교의 보건위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보유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지적 당한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설치 전국 최고라는 딱지는 비단 작년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관리 문제에 매우 둔감한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과거에 더 열악하게 지냈으니 지금도 그냥 그렇게 지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대선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 전국에서 가장 잘살고 행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8년 5월 27일(화) 제22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준호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23회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서민 가계의 시름은 커져가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어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한·미 FTA 협상 비준을 눈앞에 두고 양계, 양돈, 한우 사육농가들은 생업의 존폐가 기로에 놓여 있고, 심지어 한우가격의 하락을 고민하던 농민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경상북도는 다양한 국정 과제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전 있는 21세기 경북을 만들기 위해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가시적인 현장 행정에 힘써오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북도의 발전은 물론,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더 분발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쇠고기 수입개방 및 한후 생산기반 유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한우 사육기반은 49만두로서 전국 사육두수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의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기준 농업생산액의 12%를 차지하여 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수입 확대 방안이 양국 고위급 협상에서 타결되자 쇠고기 위생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었으며, 동시에 쇠고기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육농가는 가격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조기 출하로 산지 수소 값이 전년도말에 비해 18% 내외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 곡물가도 폭등하여 옥수수는 전년도에 비해 62%, 밀은 95%나 인상되어 양축농가는 사료비 부담으로 생업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우 사육기반의 유지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유통체계 투명성 확보, 그리고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의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특구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자립화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련 규정에 의해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96개소가 지정되었고, 그 중 우리 도는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어업관련 특구는 15개소로서 도내 지정 특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구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지정된 특구의 특별화와 특화를 위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가 특구의 생산기반 현대화에 편중 투자되고 있으며, 그나마 유통, 물류, 가공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전체 사업비의 11%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정된 특구의 특별화와 성공적인 특화 정착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는 부실한 지역특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와 수정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도 차원에서 지정되어 있는 농어업 특구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종합 육성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경상북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복숭아 폐업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주산지로서 전국 과실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청도, 영덕, 경산, 영천을 중심으로 재배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품질도 우수하여 전국 생산량의 40% 내외를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복숭아 재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2004년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폐업 보상을 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3,041ha를 폐업하고 9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말 기준 전국 재배면적 1만5,880ha의 19%에 해당되는 면적을 우리 도에서 폐업하게 되어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수입개방의 영향이 적은 복숭아를 무리하게 폐업했다는 지적과 대체작목 선택의 한계로 일부 과수로의 편중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도에서는 폐업 후 남은 복숭아 과원 경영 농가를 조직화하고 브랜드를 광역화·명품화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나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면서도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명품화된 브랜드가 미비하여 금후 복숭아 소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우수한 재배 환경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숭아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고품질 명품화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정책과 관련한 대형 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 일반회계 예산 중 24%가 복지 증진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만족도는 아직 낮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에는 인구의 고령화 및 과소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복지시설의 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209개소중 노인복지시설이 114개소로 54%를 차지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등은 설치 개소수가 적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업인의 고령화 진전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녀교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의견이 수렴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복지관의 설립이 복지정책 추진의 효율화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추진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적 상실뿐만 아니라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학습지 전문회사에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바, 초·중·고등학생의 36%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학교 폭력사고 실태에서도 2003년 57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60건으로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또한 작년 한 해에 5건이 발생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사건도 있을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처방안의 부재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지도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 제대로 잡지 않으면 학교교육의 근본적 훼손과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성폭력 사건의 사례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안심하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교 폐교에 따른 폐교시설의 활용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1981년 이후 총 581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초등학교 32개소, 중·고등학교 18개소, 총 50개소가 폐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교시설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시설은 사용자가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어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폐교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임대 중이거나 임대할 계획에 있는 폐교시설의 장단기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5월 28일(수) 제223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한혜련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천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투자유치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증유의 청년실업률과 대책 없는 농수산물의 개방 등은 우리 지역의 활력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물론 수많은 공직자들의 깊은 고뇌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을 실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6회 경북도민체전이 지난 5월14일부터 17일까지 영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천시민들은 그동안 단체장의 선거과정에서 발생된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고 지역적인 어려움들을 이번 도민체전을 통하여 화합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로 만들고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전개막을 불과 4일 앞두고 민의수렴이나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갑자기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은 영천시민과 체육인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고,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선수와 체육관계자들의 1년 여에 걸친 노력들을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내 전 시군이 선수훈련비는 물론 유니폼과 각종 대회준비를 위한 제반경

비로 이미 지출된 상태이며, 도민체전을 주최하는 영천시만 해도 시설개보수와 환경정비, 진입로 포장 등의 큰 사업들을 제외하고도 30억이나 예산을 이미 사용한 상황에서 도민체전의 무기한 연기는 크나큰 상실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행이 오는 6월5일부터 8일까지 개최기로 재결정은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에 도민체전을 연기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로 집행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효과적인 방역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지나지 않고 거의 확산 추세에 있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민체전 무기연기 결정은 과연 옳았던가 하는 의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대구시에서는 약 2만여명이 참가하는 걷기대회나 프로축구, 야구경기가 계속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확산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도민체전을 갑자기 연기하는 집행부의 결정 탓에 도민들마저 ‘아, AI가 그 정도로 위험하구나’ 하는 인식을 낳아 AI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의 공공기관이 일제히 AI예방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대기 속에 AI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AI의 주요 전파경로는 감염된 가금류와 사람의 친밀한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된다는 홍보를 하는 마당에 집행부 자체의 회의결과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전염될 수 있다고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9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에서 2시간 만에 도민체전 연기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행사를 준비해온 일선시군의 의견과 도민체전의 주최인 시·군 체육관계자들은 물론 지역 도의원의 의견도 전혀 수렴되지 않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재개최라는 후속대책을 내어놓기는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도민체전을 연기 개최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과 같은 도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의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일선시군 등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가소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경제 환경은 대외적으로 한미 FTA 체결과 중국, 일본, 유럽 등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 등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농가부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외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 취약한 농가소득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생산자패널조사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경북도내 주요 농산물 재배 농업인 300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 주요 농산물 재배농민들은 농촌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경북도내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득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현실성 있는 조사인지 반문하고 싶으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결과가 과연 맞다면 도내 농가간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북은 농민사관학교 운영, 부자농민 만들기 등 그 어느 때보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에 도내 한우 사육농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참품한우 1호점이 개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광역브랜드로 인한 육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임에도 그 실적은 출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업의 실효성마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영천지역만 해도 원래 24농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현재 6개 농가가 탈퇴를 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계통출하가 되지 않아 지역농가가 사육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사육한 한우를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수산물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도내 농가간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만 도내 농수산물 식품 해외시장 개척에서도 일부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양극화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산물의 해외홍보와 찾아가는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고 특판 행사 및 수출상담회, 해외현지 판촉전을 개최하고 행사참가 업체에 대한 항공료, 운송통관비, 통역고용료 등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수산물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을 보면, 2005년 지원액이 2억4,665만원에서 2007년에 3억3,197만원으로 34.6%로 증액되고, 참가에 따른 실적을 보면 수출계약은 2005년 947만5,000불에서 2,032만3,000불로 114.5%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금액은 2005년에 67만9,000불로 2005년 총 수출계약금의 7.2%에 지나지 않으며 2007년도에는 실제 판매수출금액은 146만4,000불로 2007년 총 수출계약금액의 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규모는 계속 커져 왔으나 그 중에서 실제적인 판매수출금액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2005년에 대비하여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수출물량 2만9,353톤에 5,299만1,000불이던 것이 2007년에는 2만7,845톤에 4,051

만9,000달러로 감소하여, 수출물량은 5.1% 줄어들고 수출금액은 23.5%나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가한 국제식품박람회도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고, 특판 행사 및 수출상담회도 미국, 일본, 대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가품목도 매년 사과, 배, 홍삼제품 등으로 이루어져 수출선의 다변화와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내실화와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식품기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인의 기업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그동안 농어촌에 막대한 예산한 투입해 왔음에도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현재의 농업구조는 농업이 1차 산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형 생산자 및 유통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카길, 켈로그와 같은 농산물 식품기업을 벤치마킹 해서 돌파구를 열자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장 한계농지나 보전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와 완화 등이 선결되어 하고, 농협 등 기존 조직과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의 재조정, 농업인의 출자능력을 포함한 재원조달 확보 등 난관에 놓여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를 별개로 한다 하여도 FTA를 대비하고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2차 및 3차 산업화가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바뀌었고 올해 초에는 이미 농협은 국산농산물 가공과 유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인 NH식품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식품정책연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식품정책연구

를 시작하는 등 최근 식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업계의 주요한 인사들은 식품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의 성공여부에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도는 올해 초에 지역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6,000억을 투입하여 대구경북에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의 식품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도내 식품기업은 2008년도 현재 1,497개의 업체에 이르지만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 수는 전체의 76.4%에 달하는 1,143개의 업체이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업체는 243개의 업체로 16.2% 정도에 지나지 않고, 1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의 업체도 105개의 업체로 7%에 불과하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업체 수는 6개 업체로 도내 전체 식품기업의 0.4%에 그치고 있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업원별 식품제조업 현황에서도 전체 식품기업 1,497개의 업체 중에서 10인 이하의 업체가 1,318개 업체로 88%를 차지하고 100인 이상 업체는 15개 업체로 1%에 불과해 우리 경북의 식품기업이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물론이고 경북의 식품산업을 활용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마련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식품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농가와 연계하고 농가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업체에게는 질 좋은 원료 수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공동교복구매에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는 475개 고교 가운데 84개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경우 34%, 충남의 경우 27% 등 타 시도의 교복공동구매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로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장려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복공동구매 장려를 위해 우리 도의 경우 도교육청에는 교복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에도 구매정보센터를 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학생 교복공동구매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교복공동구매 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보면 교복공동구매를 위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중·고등의 공동구매 실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의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 지침을 폐지시키기로 한 것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복공동구매에 나서줄 것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8년 5월 28일(수) 제223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장두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평소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교육발전 및 인재양성에 늘 노심초사 하는 조병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포항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및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계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총각 40%가 다른 나라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나가면 2010년에는 농어촌지역의 50% 이상이 이들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과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정서상 먼 훗날, 아니 10년 이내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각종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의 대립이나 갈등일 수도 있고 인종 간의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미리 예방차원의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3,000명이 넘는 이주여성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주여성들의 자녀가 2007년12월말 현재 3,700명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동남아 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낮은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괴리감에서 오는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이 주로 한국의 문화와 한글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수용 정책만을 강조하여 왔습시다라는 이보다는 이주여성 자녀들의 모국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 2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주민으로서 자라야 할 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엄마 밑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학습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학원 등에서 배울 수 있는 보충수업은 생각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입학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현재 학생 수는 1만8,769명으로 2년 사이 두 배가 증가하였고 취학 연령대에 이르지 않는 영·유아 인구도 그 두 배에 달해 향후 수년 안에 입학하는 국제결혼 자녀수가 폭증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는데 이 같은 증가세를 보면 수년 내에 국제결혼 2세들의 학습적응 문제와 학력저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의 학습보충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경도대학 학사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도대학은 경상북도에서 1996년12월에 5개학과 360명의 정원으로 인가를 받아 2008년 현재 5개학과 3계열 1,02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3배 이상으로 학교가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경도대학에서 경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학생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한 단계 도약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설립한 대학으로서 경북도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것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학사운영 문제를 보면 경북도립대학으로서 교명을 바꾸는 것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도대학의 2006년 입학한 사회복지과 학생 41명이 졸업한 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 4월 16일자입니다. 기사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교과목이 아닌 유사과목을 이수한 탓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다 따지 못하고 졸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2006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은 ‘아동음악과 율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의 교과목은 ‘아동음악과 동작’,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2005년 관련법령 개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시행규칙을 안내하였으나 경도대학에서 2006년도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졸업생 41명 중 10명이 보육교사로 취업을 하였으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한 상황이고 이미 2명의 졸업생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반려되어 사직한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자 경도대학에서는 4월16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교과목의 명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자격증을 신청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졸업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2005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과목 변경 등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무책임한 교무행정이 금번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006년도의 학사일정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인 2008년에 개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 당시의 학사일정에 따라 치른 해당과목 시험까지도 임의로 소급해서 과목 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공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식적인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으로서 교명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과 학사운영 시스템의 재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색이 경북도립대학인데 학사일정도 관련법규에 따라 맞추지도 못하고 공식적인 문서 위·변조가 발생한 금번 사태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제의 원인과 사후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월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심층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자치단체 간 경쟁력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하에만 존재하는 바닷물로 청정성이 뛰어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 함량이 일반 생수보다 10~50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먹는 물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식품, 의료, 에너지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2012년 이후 국내 시장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21세기의 대체자원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70~80년대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산업화에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이 약 1,000여종에 이르고 연간 2조 5,000억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미래에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여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식수, 식품, 의약품 등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수 담수화 등을 포함한 해수의 다각적 이용으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웃 강원도의 경우 양양군, 고성군, 강릉시 등에서 민간사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품개발 및 시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경우 민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취수해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에 총 여덟 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다섯 곳, 경북 세 곳으로서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세 곳 모두 울릉도에 집중되어 있어 취수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강원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해양조사 및 수계분석 등을 통해 동해 인근 연안에도 취수해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의 경우 속초, 경동대학이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해양심층수학과를 개설하여 산·학·관 공동협력을 통한 관련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산·학·관 협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는 21세기 마지막 남은 청정자원으로서 동해안벨트를 따라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해양심층수 개발을 선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학생의 건강체력 저하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스크에서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체력이 한·중·일 국가 중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도내 초·중등 학생의 최근 5년간 체격과 건강 체력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체격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남녀 평균 신장은 1.7cm 몸무게는 1.4kg 정도 증가하여 뚜렷한 서구체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몸무게 증가추세에 따른 비만율의 경우는 초등학생 1.5%, 중학생 2.7%, 고등학생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도비만보다 중·고도비만 증가율이 근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건강체력 급수 현황을 보면 상위 1~2급은 약간씩 줄었고, 3~4급은 전체학생의 50%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5급의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왜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운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교과과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 체력저하와 비만이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요즘 학생들의 서구화된 육식위주의 식단 패턴과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도 비만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육교과과정을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방법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저칼로리, 저염화 식단으로 점차 개선하여 단맛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입맛을 바꿀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5월 28일(수) 제223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경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순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경부운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상북도는 낙동강 본지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 문과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2020년까지 2조130억원을 투입하는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즉, 생태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포츠산업 육성, 낙동강 문화 재조명, 전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자연생태체험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낙동강 연안 개발계획이 그것입니다.

또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낙동강에 잠재된 다양한 자연 현황 조사를 위해 지난 4월30일 낙동강 700리 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낙동강이 앞으로 경상북도의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노력들은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여지기에 보다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경부운하의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다면 경북이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더불어 기존의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갖고 있지만 바다와 연결을 맺지 못하는 경북 여타 지역의 외역 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부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점차 그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경북도청을 최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물길을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는 발언을 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이상 찬반 양론이 우리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도록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며, 이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로 상호 의견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나아가서 낙동강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 경북에 서만이라도 의견 수렴을 거쳐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동차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속기록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008년 3월을 기준으로 1,659만대를 돌파하여 우리나라 인구 3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1,700만대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이용되면 이용될수록 대기, 소음 등의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되며 교통사고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경북은 2008년 3월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경기도의 383만대, 서울의 295만대, 경남의 121만대의 다음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의 사도별 자동차 사고발생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2006년 기준 전국의 사고발생건수는 213,745건으로 이 중에서 경북은 전국 자동차사고 발생건수의 7.6%인 16,296건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40,696건, 서울의 38,237건 다음의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에서도 전국평균이 13명인데 비하여 경북은 26명으로 나타나 전남의 28명, 충남의 27명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부상자 수도 전국평균이 702명인데 비하여 경북은 957명으로 나타나 전남 986명, 강원도 98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 외에도 여러 지표에서 경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경북은 자동

차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많이 낳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동차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동차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을 경상북도 대중교통정책의 미비도 그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바 향후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통문화의 선진화 방안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도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 본청 및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와 승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모두 89대인데 이 중에서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는 전체 관용차량 중 1대도 없는 형편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으며 또한 사업소의 업무 특성상 소형승용차 운행은 효율성이 없어 미보유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나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경차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차사용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전거도로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의 자동차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심적 국내 교통부문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2005년경부터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 적극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안된 주요정책은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자전거 등 녹색교통 기반조성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이미 1995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바가 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바가 있고, 200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주요사업이었던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등 이용시설 정비 등에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자

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경상북도에서도 자전거도로에 지금까지 총 89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지만 자전거도로는 계획 총 연장거리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거리는 30% 정도인 561km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70%인 1,300여km는 아직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2001년 한해에 81.5km 개설 연장되었던 것이 2007년 한해에는 5.4km밖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투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는 101억1,800만원이었으나 2008년 현재는 44억8,000만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자전거 정책의 또 하나의 맹점은 자전거 정책이라면 의례히 자전거도로를 연장하고 자전거보관소 숫자 등으로 국한되어 자전거 이용의 증가라는 진정한 성과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정책이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단절되어 제대로 된 의사수렴 구조도 구축되지 않았습니 다. 특히 이 기간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보급률 등 자전거 정책에 대한 기초 데이터도 조사되지 않았거나 무관심의 영역에서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 본의원이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 하였으나 자전거보관소의 수와 보관대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턱, 안전시설의 수가 몇 개인지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자전거이용률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전거보관소의 숫자를 보더라도 경북도내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총 47만여대인데 자전거보관소 수는 1,043개 정도, 보관대수는 3만2,000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도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것은 그나마 상주시뿐이고 안동시를 비롯한 경주, 구미, 영주, 문경, 청송 등 여러 시군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로는 사업비 부족, 협소한 도로사정,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기름값이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새삼 증대되어 자전거가 에너지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보다는 사회환경적 시각에서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중심의 시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확대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전체의 건강관리비용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에 이에 본의원은 이제 까지 갖고 있던 자전거 정책에 대한 낡은 사고를 버리고 대대적인 인식전환과 더불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도의 추진상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아직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일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더불어 기존의 자전거도로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명확한 안내표지판과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계획 하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본의원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그 대책으로 철도, 버스정류장 등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이용자가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버스정류소, 철도, 지하철역 등에서 자전거를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역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낙동강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연안을 따라 자전거를 활용하는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으며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런던 국제협약 96 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3년과 2012년에 각각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향후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2012년 말까지 육상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인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까.

실제 하수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242만6,000여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77%인 186만9,000여톤이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분되고 있으며 11.7%인 28만3,000여톤이 소각방식으로, 그리고 9.8%인 23만9,000여톤이 재활용되며 1.4%인 3만4,000여톤이 육상매립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하수 슬러지 발생량은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11만4,236톤이 발생하고 이 중에 92%인 10만5,412톤이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하수 슬러지에 대한 개선은 재활용이 5.1%로 5,913톤, 소각이 2.1%인 2,482톤, 육상매립이 0.4%인 429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2008년 현재 경상북도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가동 중인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김천, 구미, 문경시의 3곳에 지나지 않으며, 안동, 경주, 상주, 울진이 설계완료가 되었고, 영덕, 고령, 칠곡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03년 7월부터 토양오염을 이유로 하수 슬러지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해양투기방식까지 전면 금지된 이상 앞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증설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입지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집단민원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은 향후 슬러지 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하여도 관할구역을 대규모로 광역화하여 대구시 등과 시도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민간위탁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조병인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내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40% 정도가 수업과 수업 간 쉬는 시간에 발생,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에 2,547명, 2005년에도 2,541명, 그리고 2006년에도 3,002명이 안전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경북의 학교수가 978개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당 안전사고가 3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인 3.5건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에 32건, 2006년에 33건이 일어나는 등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5월 28일(수) 제223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송필각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의장님이 4선이 되시니까 집행부 답변의 어떤 음성에 따라서 피곤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시고 아마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답변이 아주 저음으로 나오니까 아마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칠곡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송필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복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도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은 바로 ‘호국의 달’입니다. 지난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의 피 향내가 지금까지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민족의 재단에 바친 애국자들입니다. 해마다 맞는 6월에는 현충일 추념식, 6.25기념식, 그리고 호국 · 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각종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지만 정녕 그분들의 고귀한 삶의 가치는 아직도 자리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도 힘있고 강할 때 더욱 강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조국을 수호하려는 호국문화의 확산과 선열들의 고귀한 삶의 가치는 확고하게 우리들이 가슴 가슴마다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애국심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호국보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요, 행정기관이요, 국민 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신문내용과 유해 발굴 현장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21일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 중 한강에서 6.25 미군 유해 수중수색 사진입니다.

6.25가 종전된 지 55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아직도 전쟁 중 사망한 자국 병사의 유해를 찾는 국가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현장 등을 잘 보시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동료의원들의 협조와 자문을 바탕으로 입법화하여 6월 정례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6.25전쟁 당시 최후 보루였던 경북도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현재 거의 80세에 이르거나 넘었지만 젊은 날 국가로부터 냉대 받거나 시련의 삶을 겪으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작금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조례 제7조제3호의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을 위해 6월 추경에서 도비 4,000만원과 시·군비 4,000만원을 계상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4월말 현재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는 329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5조의 예우 및 각종 공훈 선양사업, 제6조의 보훈단체 및 참전자 단체의 지원, 제7조의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판매기 설치, 무료건강검진 등은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제8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그에 따른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동 조례 제정추진 시 도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어려운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시행된다면 그렇게 제정된 조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초 제정 시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하여 비록 폐회 중이더라도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도지사께서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의 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서울 원정쇼핑가 역외소비 행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투자유치 실적과 분투쟁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246개 지자체의 총 자산은 794조1,874억원이고 총 부채는 29조2,6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자산은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22조6,000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채는 2.3%에 해당하는 7,000억원으로 9개 광역도 가운데 4번째로 부채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 그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며 특정 백화점에서만 쇼핑하는데 소비한 액수가 무려 연간 2,500억원에 이르며 그중 경북지역은 약 40%에 해당하는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대구권역에 있는 19개의 대형마트, 7개의 백화점 등 26개의 대형 유통업체 중 21개

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작년 한해 전체 매출액 3조원 중 75%에 해당하는 2조2,500억원이 외지로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원정쇼핑을 하게 될 경우, 서울시내 남대문, 동대문 등의 대형 할인시장,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의 레저 및 문화시설 이용,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료, 유명 음식점 등을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소비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KTX는 서울과의 거리를 100분 시대로 만들었지만 지역의 돈이 서울로 유출되고 서울 원정쇼핑으로 소비하는 규모가 급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고 힘겹게 기업투자를 유치한들 지역자금의 불균형한 유출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투자유치 이상으로 심각히 진단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대중교통 및 도로환경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전국 129개 시·군 대상 대중교통 대책 추진상황 평가에서 대구시는 2위를 차지한데 반해 경북은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상위 30% 이상에 든 지자체는 경산시와 성주군 두 곳 뿐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버스 대기시간이 타 시·도보다 길고 환승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벽지노선은 크게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다가 결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북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과 함께 도로환경 사정은 얼마 나 심각한지 천년고도 경주시가 몇 년째 전국 자치단체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7번 국도의 경우 도로법상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울산 구간의 도로 폭은 3.2m, 천북삼거리~불국동 신기리 구간은 2.8m로 기준 규격에 크게 미달하여 전국 교통사고 및 사망률 최고를 기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칠곡군 동명면 기성삼거리 한티재길은 건설부가 지정한 아름다운도로입니다. S자가 겹쳐겹쳐 있는 도로에 교통량은 많고 인도는 없고 가로등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에 도로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지역의 높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기 중 단기방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기 중 단기방학이 그 취지에 관계없이 다소 학부모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행을 권장하여 시행하는 첫 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도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탁상행정식 내지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조령모개식 행정으로 일관해 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시행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하여 단 하루만 학교장 재량수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연휴 때문에 4일은 쉴 수가 있었습니다.

경북도내 천체 초등학교 497개교 중 403개교, 중학교는 297개교 중 200개교가 단기방학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5월4일부터 12일까지 연휴를 포함하여 최장 9일간의 단기방학을 가졌습니다.

단기방학이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통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일부 가정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급식을 하지 못해 끼니 때우는 걱정부터 해야 하는 우울한 단기방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은 학교일정에 맞추어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단위 여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아동 성폭력, 실종·살해 등으로 인해 어린 아동들의 등·하교 때마다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기 중에 긴 단기방학 실시로 인해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컴퓨터게임이나 하게 하면서 홀로 방치해 두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5일제 수업이 월2회 실시한 이후 연간 16~17일 이상 설 수 있으며, 올해 5월은 연휴를 가장 잘 활용해도 충분히 재량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그토록 충실하게 따르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교사들만을 위한, 아니면 관광·레저·숙박업체들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단기방학입니까?

경북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대도시와는 달리 주변에 보이는 것이 자연학습장이요, 연중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경쟁이나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지역과 학생의 특수성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권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철학, 가치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마다 달리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경북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단기방학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학교 단체급식 식기 잔류 세척제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제1조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학교급식 본연의 취지는 식품안전성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정작 급식기구의 세척이나 식기세척제 사용에 의한 위해성분에 관해서는 대부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급식소에는 음식물을 씻어내는 세제와 식기의 물기를 빨리 없애주는 건조촉진제를 사용합니다.

세척제에는 큐멘설펀산-나트륨, 키실렌설펀산-나트륨, 툴루엔설펀산-칼륨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이 있어서 화학세제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 자녀들은 급식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교육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직접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기류 중 세척제의 잔류량과 위해요소에 대해서 도내 초·중·고교 9개 학교의 급식소, 총 급식인원 1만322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식기류 중 세척제 잔류 함량조사 결과 표본조사 대상 9개교의 급식 식기에서 5개교의 대상검체 모두 세척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4개 학교는 대상검체 각 6개 종류 중 1개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급식 식기에서 잔류 세척제의 검출량은 ℓ 당 0.1mg~0.37mg로 나타났고 먹는 물의 잔류허용 기준은 ℓ 당 0.5mg 이하로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상학교 3개교 중 2개교에서 위해성으로 검출되었으며, 특히 1개교에서 검출된 세척제의 잔류량은 리터당 0.35~0.95밀리그램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초·중학교보다 검출률 및 검출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검출된 시료 두 건의 경우 먹는 물의 잔류 허용기준 ℓ 당 0.5mg을 초과하는 0.77mg과 0.95mg이 각각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위생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을 하는 모든 기관과 회사가 식품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앞으로는 급식식기류의 잔류 세척제 점검을 비롯하여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및

조리 종사자에게 세척제 사용요령, 자동세척기의 운용방법 등 식기류 전반에 걸친 정기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보 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금월 2일 약목고등학교 이전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례에서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호국·보훈에 대해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식순에 의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전몰군경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감,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그때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10초 아닌 5초라도 선열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시간조차 무시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닙니까? 우리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참담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정신을 진작시켜 애국·애족 재무장 교육이 국민된 도리로서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기차고 강한 경북, 교육 때문에 떠났던 도민이 다시 돌아오고픈 교육경북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이 있는 이상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보고서(제222,223회 임시회)

2008. 6 인쇄 / 2008. 6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